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선박직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1~6급)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이 국제협약(STCW)보다 더 긴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의 승무경력기간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족한 국적선원 인력유입 강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에 부합하게 1. 항해사 / 2 기관사 / 2의2 전자기관사 / 5.

운항사의 승무경력기간 조정 등 (안 별표 1의 3)

나. 가.의 별표 1의3 기관사 비고 3의 조정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령 본문

의 문구인 ‘어선에서 3년 이상’의 ‘3년’을 ‘2년’으로 변경(안 제4조1항 제1호다목2)

다. 해석상 모호한 문구를 명확한 문구로 변경(안 별표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선박에서 3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에서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선박에서 2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으로 개정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

1. 항해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선장, 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	1년
			선장, 1등 항해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2년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3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1년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2년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3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함정의 운항	1년 2년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15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2년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4년
	4급 항해사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함정의 운항	1년 2년
			함정의 운항	4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	함정의 운항	4년

		정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5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 의 여객선 또는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5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3년 6개월
	5급 항해사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 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 정	함정의 운항	3년 6개월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길이 9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총톤수 5톤 이상의 상선	선박직원	1년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3년

		총톤수 25톤 이상의 상선	선박의 운항	3년
	6급 항해사	배수톤수 5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25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6급 항해사		길이 9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2년
		총톤수 5톤 이상의 상선	선박의 운항	2년
		배수톤수 5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2년

비고

1. 5급 항해사부터 3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항해사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받기 위한 위의 승무경력에는 최소한 다음의 승무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선박(총톤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
1~2급 항해사	1천600톤 이상	6개월 이상
3급 항해사	500톤 이상	6개월 이상
4급 항해사	100톤 이상	6개월 이상
5급 항해사	25톤 이상	3개월 이상

3. 받으려는 항해사면허가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고,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한다. 다만, 함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에서 모두 인정한다.
4.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항해선인 상선에서 당직항해사로 승무한 경력은 6개월에 한정하여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한다.
5. 5급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급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6.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2007년 11월 23일 이후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

- 력부터 인정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7. 자격란 중 운항사는 항해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8.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9.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0.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1. "선박의 운항"이란 선박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2.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1년 이상 선박의 운항 직무를 수행한 승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6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이 사람이 6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한 후 5급항해사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길이 9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선박의 운항 직무를 수행한 승무경력을 포함하여 총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또는 1등 운항사	1년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및 1등	2년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2년 3년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1년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천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2년 3년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1년
			기관의 운전	2년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선박직원	1년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2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4년
	4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1년
			기관의 운전	2년
4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4년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6개월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6개월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2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2년

비고

1. 5급 기관사부터 3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기관 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기관사 면허를 받기 위한 위의 승무경력에는 최소한 다음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선박(주기관 추진력)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
1급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6개월 이상
2급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6개월 이상
3급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6개월 이상
4급기관사	350킬로와트 이상	6개월 이상
5급기관사	350킬로와트 이상	3개월 이상

3.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6급의 기관사면허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가.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어선에서 1년 이상 승선하거나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어선에서 2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어선면허

나. 위 표 6급 기관사의 승무경력 중 가목을 제외한 승무경력: 상선면허

4. 자격란 중 운항사는 기관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5. 주기관 추진력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에서 1년 이상 기관의 운전 직무를 수행한 승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6급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이 사람이 6급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후 5급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기관 추진력 1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에서 기관의 운전 직무를 수행한 승무경력을 포함하여 총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의2. 전자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전자기관사	4급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또는 4급운항사 이상의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3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또는 1등기관사	1년
			기관장 및 1등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2년

		의 선박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5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2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4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4년
전자 기관사 (제4조 제1항 제3호의 3에 따른 이동식 시추선 면허에 한정 한다)	「국가기술훈련법」에 따른 전기 기사 이상 또는 전자 기기 기능장·전자기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1년
	「국가기술훈련법」에 따른 전기 기사 이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2년

	상 또는 전자기기 기능사·전자산업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시추선		2년 6개월

3. 통신사

가. 전파통신급

받고자 하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통 신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함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6월
2급 통 신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함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6월
3급 통 신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함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4급 통 신사	제한무선 통신사 이상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함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나. 전파전자급

받고자 하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통 신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3월
2급 통	전파전자통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통신의 담당 또는	3월

신사	신 산업 기사 이상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실습	
3급 통 신사	전파전자통 신기능사 이 상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 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4급 통 신사	해상무선 통 신사 이상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 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비고

1. 가목 및 나목의 자격은 전파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어야 한다.
2. 무선통신 또는 통신의 실습은 선장·항해사 또는 운항사의 직무와 병행하여 할 수 있다.

4. 소형선박 조종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소형선박 조종사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비고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낙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낙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운항사

받고자 하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1급 항 해사 또는 1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선장·운항장 또는	1년
		원양수역을 항행	하는 1등 운항사	
		구역으로 하는	선박직원	2년
		총톤수 1천600 톤 이상의 자동 화선박		
		연안수역 또는	선장·기관장·1	2년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3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 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장 ·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선박직원	1년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장 · 기관장 · 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2년
				3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함정의 운항	3년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장 · 기관장 · 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1년
				2년
		배수톤수 2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1년
			함정의 운항	2년
4급 운항사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			

비고

1. 받고자 하는 면허가 항해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항해사 또는 항해전문의 운항사에 한하며, 받고자 하는 면허가 기관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기관사 또는 기관전문의 운항사에 한한다.
2. 운항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에 등급별로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행한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합산한다.
 - 가. 1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
 - 나. 1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
 - 다. 2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
 - 라. 2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
 - 마.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는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또는 항공기	직무	기간	승선 시간
중형 수면 비행 선박 조종사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 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 어선	선박 직원	2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 상 500톤 미만의 상선		3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 는 부장	2년	—

			함정의 운항	3년	-
	소형 수면비행선 박 조종사	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수 면비행선박	선박 직원	-	200시간
소형 수면 비행 선박 조종사	5급 항해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어선	선박 직원	1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또는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어선		2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1년	-
			함정의 운항	2년	
		수면비행선박	수면비 행선박 의 운항	2년	-

비고

항해사 또는 운항사 자격과 그에 따른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승무경력 외에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 · 1등 항해사 · 기관장 · 1등 기관사 · 운항장 · 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 (제22조제

2항관련)

1.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크기 (총톤수)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5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3천톤 이상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1의2.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어선의 길이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24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선장	1년 이상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선장	2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80미터 이상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비고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

2. 기관장 · 1등 기관사

선박의 크기 (주기관 추진력)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년 이상

75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2년 이상(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 기관사	1년 이상
3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3년(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
	1등 기관사	1년 이상

비고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3천 킬로와트 미만인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에 1등 기관사로 승선했을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 경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통신장(전파통신급에 한함)

선박의 크기(총톤수)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1만톤 이상 2만톤 미만	통신장	1년 이상
2만톤 이상	통신장	2년 이상

4. 자동화선박의 선장·운항장·1등 운항사

선박의 크기(총톤수)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3천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 장	3년 이상[선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항해전문)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항장	3년 이상[운항장·1등 운항사(기관전문)·기관장·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 운항사	1년6월 이상[2등 운항사·2등 항해사·2등 기관사 이상의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 고

운항사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은 승무한 직무와 전문분야가 같아야 한다.

5. 수면비행선박의 선장·1등 항해사

선박의 종류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소형 수면비행선박	선 장	1년 이상
중형 수면비행선박	선 장	2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비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은 수면비행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한정면허) ① 생략 1. 생략 가.내지 다. 생략 1) 생략 2)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선박 에서 <u>3년</u>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제4조(한정면허) ① 생략 1. 생략 가.내지 다. 생략 1) 생략 2) ----- ----- --- <u>2년</u> -----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1의3】

현행					개정안				
【별표 1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제5조의2관련)					【별표 1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제5조의2관련)				
1. 항해사					1. 항해사				
받으려는 면허	자격	선박	직무	기간	받으려는 면허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 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선장, 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	<u>2년</u>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 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선장, 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	<u>1년</u>
			선장, 1등 항해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u>4년</u>				선장, 1등 항해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u>2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u>3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u>2년</u>
		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u>5년</u>			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u>3년</u>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u>2년</u>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u>1년</u>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 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 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 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 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u>2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 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 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 선	선장 또는 1등 항 해사	<u>3년</u>
			선장 및 1등 항해 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u>4년</u>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함정의 운항	<u>2년</u> <u>3년</u>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 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 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 으로 하는 길이 15미터 이상 의 어선	선박직원	<u>2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 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 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 항 해사	<u>3년</u>
			선장 및 1등 항해 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u>4년</u>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 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 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 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 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u>1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 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 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 선	선장 또는 1등 항 해사	<u>2년</u>
			선장 및 1등 항해 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u>3년</u>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함정의 운항	<u>1년</u> <u>2년</u>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 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 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 으로 하는 길이 15미터 이상 의 어선	선박직원	<u>1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 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 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 항 해사	<u>2년</u>
			선장 및 1등 항해 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u>3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u>5년</u>
	4급 항해사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함정의 운항	<u>2년</u> <u>3년</u>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u>5년</u>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u>30톤</u>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 이상 <u>30톤</u> 미만의 여객선 또는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u>30톤</u>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u>4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u>4년</u>
	4급 항해사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함정의 운항	<u>1년</u> <u>2년</u>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u>4년</u>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u>25톤</u>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 이상 <u>25톤</u> 미만의 여객선 또는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u>25톤</u>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u>3년 6개월</u>

	5급 항해사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u>4년</u>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u>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u>	<u>선박직원</u>	<u>1년</u>
		<u>총톤수 30톤 이상의 상선</u>	<u>선박직원</u>	<u>1년</u>
		길이 9미터 이상 <u>12미터 미만</u> 의 어선	선박직원	<u>2년</u>
		총톤수 5톤 이상 <u>30톤</u> 미만의 상선	선박직원	<u>2년</u>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3년
		총톤수 <u>30톤</u> 이상의 상선	선박의 운항	3년
	6급 항해사	배수톤수 <u>30톤</u>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u>30톤</u>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5급 항해사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u>3년 6개월</u>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길이 9미터 이상 <u>12미터 미만</u> 의 어선	선박직원	<u>1년</u>
		총톤수 5톤 이상 <u>25톤 미만</u> 의 상선	선박직원	<u>1년</u>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3년
		총톤수 <u>25톤</u> 이상의 상선	선박의 운항	3년
		배수톤수 <u>5톤</u>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u>25톤</u>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6급 항해사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1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선박의 운항	2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2년
	길이 9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의 운항	2년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 의 상선	선박의 운항	3년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비고

1. 5급 항해사부터 3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4급 항해사부터 1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6급 항해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길이 9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의 어선	선박의 운항	2년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 의 상선	선박의 운항	2년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 의 함정	함정의 운항	2년

비고

1. 5급 항해사부터 3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4급 항해사부터 1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해사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받기 위한 위의 승무경력에는 최소한 다음의 승무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받으려는 항해사면허가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고,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 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한다. 다만, 함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에서 모두 인정한다.
4.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항해선인 상선에서 당직항해사로 승무한 경력은 6개월에 한정하여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한다.
5. 5급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급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6.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2007년 11월 23일 이후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부터 인정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7. 자격란 중 운항사는 항해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8.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9.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0.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1. "선박의 운항"이란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신설>

2. 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선박(총톤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
1~2급 항해사	1천600톤 이상	6개월 이상
3급 항해사	500톤 이상	6개월 이상
4급 항해사	100톤 이상	6개월 이상
5급 항해사	25톤 이상	3개월 이상

3. 받으려는 항해사면허가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고,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 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한다. 다만, 함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에서 모두 인정한다.
4.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항해선인 상선에서 당직항해사로 승무한 경력은 6개월에 한정하여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한다.
5. 5급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급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6.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2007년 11월 23일 이후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부터 인정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7. 자격란 중 운항사는 항해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8.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9.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0.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1. "선박의 운항"이란 선박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2.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1년 이상 선박의 운항 직무를 수행한 승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6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이 사람이 6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한 후 5급항해사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길이 9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선박의 운항 직무를 수행한 승무경력을 포함하여 총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또는 1등 운항사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u>2년</u> <u>4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u>3년</u> <u>5년</u>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u>2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u>2년</u>

2. 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또는 1등 운항사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u>1년</u> <u>2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u>2년</u> <u>3년</u>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u>1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u>1년</u>

3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천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u>3년</u>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u>4년</u>
			기관장	<u>2년</u>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u>3년</u>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u>4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u>3년</u>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u>4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u>5년</u>

3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천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u>2년</u>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u>3년</u>
			기관장	<u>1년</u>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u>2년</u>
			선박직원	<u>1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u>2년</u>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u>3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u>4년</u>

	4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기관의 운전	<u>2년</u> <u>3년</u>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u>5년</u>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u>4년</u>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u>4년</u>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u>350킬로와트</u>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u>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u>	<u>선박직원</u>	<u>2년</u>

	4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기관의 운전	<u>1년</u> <u>2년</u>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u>4년</u>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u>3년 6개월</u>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u>3년 6개월</u>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u>150킬로와트</u>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삭제>	<삭제>	<삭제>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u>350</u> 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u>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u>	<u>기관의 운전</u>	<u>1년</u>
		<u>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u>	<u>기관의 운전</u>	<u>2년</u>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u>500킬로와트 미만</u> 의 선박	기관의 운전	<u>3년</u>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u>500킬로와트 미만</u> 의 함정	기관의 운전	<u>3년</u>

비고

1. 5급 기관사부터 3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기관당직 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u>150</u> 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u>500킬로와트 미만</u> 의 선박	기관의 운전	<u>2년</u>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u>500킬로와트 미만</u> 의 함정	기관의 운전	<u>2년</u>

비고

1. 5급 기관사부터 3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기관당직 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4급 기관사부터 1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6급의 기관사면허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가.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어선에서 1년 이상 승선하거나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어선에서 3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어선면허

나. 위 표 6급 기관사의 승무경력 중 가목을 제외한 승무경력: 상선면허

4. 자격란 중 운항사는 기관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신설>

2. 4급 기관사부터 1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관사 면허를 받기 위한 위의 승무경력에는 최소한 다음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선박(주기관 추진력)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
1급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6개월 이상
2급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6개월 이상
3급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6개월 이상
4급기관사	350킬로와트 이상	6개월 이상
5급기관사	350킬로와트 이상	3개월 이상

3. 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6급의 기관사면허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가.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어선에서 1년 이상 승선하거나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어선에서 2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어선면허

나. 위 표 6급 기관사의 승무경력 중 가목을 제외한 승무경력: 상선면허

4. 자격란 중 운항사는 기관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5. 주기관 추진력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에서 1년 이상 기관의 운전 직무를 수행한 승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6급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이 사람이 6급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후 5급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기관 추진력 1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에서 기관의 운전 직무를 수행한 승무경력을 포함하여 총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의2. 전자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전자 기관사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0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2년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5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3년

2의2. 전자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전자 기관사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0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2년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5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u>5년</u>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u>5년</u>
전자 기관사 (제4조 제1항 제3호의 3에 따른 이동식 시추선 면허에 한정 한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사 이상 또는 전자 기기 기능 장·전자기 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1년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능사 이 상 또는 전 자기기 기 능사·전자 산업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2년 6개월

3. 통신사
<생략>

4. 소형선박 조종사
<생략>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u>4년</u>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u>4년</u>
전자 기관사 (제4조 제1항 제3호의 3에 따른 이동식 시추선 면허에 한정 한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사 이상 또는 전자 기기 기능 장·전자기 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1년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능사 이 상 또는 전 자기기 기 능사·전자 산업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2년 6개월

3. 통신사
<생략>

4. 소형선박 조종사
<생략>

5. 운항사

받고자 하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1급 항해사 또는 1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선박직원	<u>2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박직원	<u>4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u>3년</u>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u>5년</u>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u>3년</u>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선박직원	<u>2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박직원	<u>3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u>3년</u>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u>4년</u>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함정의 운항	<u>3년</u> <u>4년</u>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박직원	<u>2년</u>

5. 운항사

받고자 하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1급 항해사 또는 1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선박직원	<u>1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박직원	<u>2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u>2년</u>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u>3년</u>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u>2년</u>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선박직원	<u>1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박직원	<u>2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u>2년</u>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u>3년</u>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함정의 운항	<u>2년</u> <u>3년</u>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박직원	<u>1년</u>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u>2년</u>
		배수톤수 2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함정의 운항	<u>3년</u>
4급 운항사	4급항해사 또는 4급기관사			

비고

1. 받고자 하는 면허가 항해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항해사 또는 항해전문의 운항사에 한하며, 받고자 하는 면허가 기관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기관사 또는 기관전문의 운항사에 한한다.
2. 운항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에 등급별로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행한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합산한다.
가. 1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나, 1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다. 2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라. 2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마.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는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생략>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u>1년</u>
		배수톤수 2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함정의 운항	<u>2년</u>
4급 운항사	4급항해사 또는 4급기관사			

비고

1. 받고자 하는 면허가 항해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항해사 또는 항해전문의 운항사에 한하며, 받고자 하는 면허가 기관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기관사 또는 기관전문의 운항사에 한한다.
2. 운항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에 등급별로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행한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합산한다.
가. 1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나, 1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다. 2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라. 2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마.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는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생략>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4】

현행	개정안																																
[별표 4]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 1.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외의 선박) <생략> 1의2.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table><tr><th>어선의 길이</th><th>승무할 직무</th><th>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th></tr><tr><td>24미터 이상 60미터 미만</td><td>선장</td><td>1년</td></tr><tr><td rowspan="2">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td><td>선장</td><td>2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td></tr><tr><td>1등 항해사</td><td>1년 이상</td></tr><tr><td rowspan="2">80미터 이상</td><td>선장</td><td>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td></tr><tr><td>1등 항해사</td><td>1년 이상</td></tr></table> 비고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 2. 기관장·1등 기관사	어선의 길이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24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선장	1년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선장	2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80미터 이상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별표 4]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 1.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외의 선박) <생략> 1의2.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table><tr><th>어선의 길이</th><th>승무할 직무</th><th>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th></tr><tr><td>24미터 이상 60미터 미만</td><td>선장</td><td>1년 이상</td></tr><tr><td rowspan="2">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td><td>선장</td><td>2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td></tr><tr><td>1등 항해사</td><td>1년 이상</td></tr><tr><td rowspan="2">80미터 이상</td><td>선장</td><td>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td></tr><tr><td>1등 항해사</td><td>1년 이상</td></tr></table> 비고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 2. 기관장·1등 기관사	어선의 길이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24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선장	1년 이상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선장	2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80미터 이상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어선의 길이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24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선장	1년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선장	2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80미터 이상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어선의 길이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24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선장	1년 이상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선장	2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80미터 이상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	1년 이상																															

선박의 크기 (주기관 추진력)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년 이상
75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2년 이상(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 기관사	1년 이상
3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3년 <u>이상(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u>
	1등 기관사	1년 이상

비고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3천 킬로와트 미만인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에 1등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통신장(전파통신급에 한함)

<생략>

4. 자동화선박의 선장·운항장·1등 운항사

<생략>

5. 수면비행선박의 선장·1등 항해사

<생략>

선박의 크기 (주기관 추진력)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년 이상
75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2년 이상(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 기관사	1년 이상
3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3년 <u>이상(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이상</u>
	1등 기관사	1년 이상

비고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3천 킬로와트 미만인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에 1등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통신장(전파통신급에 한함)

<생략>

4. 자동화선박의 선장·운항장·1등 운항사

<생략>

5. 수면비행선박의 선장·1등 항해사

<생략>